

투자권유준칙

제정 2023.08.01

I.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에 따라 나틱시스자산운용(주) (이하 “회사”라 한(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금소법,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 3 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말한다.
-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a.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b. 금소법시행령 제 12 조 제 1 항 제 3 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 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III.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46 조제 2 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 3 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별지 1호]의 투자권유 불원 확인 양식을 참고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7.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 조부터 제 12 조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임직원은 이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IV.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IV-1. 투자자 정보

8.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 ⑥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되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9.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 1 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IV-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 2>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별지 제 1 호]의 서식을 이용하여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11.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a.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b.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c.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d.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i)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ii)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iii)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e. 투자자(법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f.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a.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b.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IV-3.설명의무

- 12. **설명의무**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①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a.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b.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④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1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b.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c.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
 - d.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e.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 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4.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3>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a.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b.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I.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5.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 조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a.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b.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c.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d.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일반 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관한 상담원의 질문에 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2 제④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투자자 상담 시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성명, 나이, 가족관계/법인일 경우 기업명, 업종 등), **[투자목적 및 투자기간]**, **[재무상황]**, **[투자경험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기대수익률 및 손실에 대한 태도]** 등을 질의를 통하여 반드시 파악해야 하며, 상담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과 상담결과 권유하게 된 금융투자상품명과 상담일자, 상담자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 투자자 유형 :

- 공격 투자형
- 적극 투자형
- 위험-수익 중립형
- 안정 추구형
- 안정형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36 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절차 이후에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본인의 투자자 상담을 통해 귀사에서 구분한 투자자 정보에 대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절차 이후에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5. 본인은 귀사와의 상담을 통한 투자자 유형 분류

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일임, 금전신탁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p>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 46 조제 2 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 3 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p>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p>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p>	
---	--

부적정 파생상품 등 거래 확인

<p>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회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일자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p>	
---	--

< 별표 1 >

< 투자자유형 분류- 일반투자자 >

고위험  저위험	1 단계	공격 투자형
	2 단계	적극 투자형
	3 단계	위험-수익 중립형
	4 단계	안정 추구형
	5 단계	안정형

< 투자예정기간을 감안한 투자자 유형 분류 - 일반투자자 >

구 분		위험 감내도 (투자기간 등)		
		단기 (1년 미만)	중기(1년 이상 3년 미만)	장기(3년 이상)
투 자 자 유 형	(고위험) ⇕ (저위험)	위험-수익중립형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 중립형	적극투자형
		안정추구형	안정 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 투자자 유형분류 - 전문투자자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 투자자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

투자자 유형 자산배분 유형	고위험선호 ← → 저위험선호	
	유형군 1 (주식)	BM+α, 성장주 중소형주, 하이알파, 코스닥주, 섹터주
유형군 2 (채권)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BW 등) ← → 초우량 회사채, 국채	
유형군 3 (펀드)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형 펀드, 변동성이 큰 펀드 ← → 국공채형 펀드, 변동성이 작은 펀드, MMF	
유형군 4 (이종자산)	주식, 파생상품, 투기등급회사채, 주식관련사채, 주식워런트, 원금비보존형 ELS (DLS), ELW, 이머징국가채권, 외화 주식 ← → 국채, MMF, 원금보존형 ELS	

*

주식		채권		펀드	기타
국내	해외	국내	해외		
- BM+α - 하이 알파 - 성장주 - 중소형주 - 코스닥주 - 섹터주 - 가치주 - 배당주	- 선진국 - 이머징마켓 - 섹터 및 특정지역 관련 주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관련사채	- 국공채 - 회사채 - 하이일드채 - 후순위채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재간접펀드 - 해외(선진/이머징)	- 구조화 상품 (원금보장/비보장) - 대체투자 등 (금, 원자재, 리츠 등)

<별표 2>

적합성 판단 방식

■ 투자자의 적합성은 투자자와 상담 후, 상담결과를 상담보고서에 기록하여 적합성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장외파생상품 제외)

■ 세부과정

- 투자자와 상담 시에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가족관계/법인일 경우 기업명, 업종 등), **[투자목적 및 투자기간]**, **[재무상황]**, **[투자경험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기대수익률 및 손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 또는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을 제시함.
- 상담 후에는 투자권유의 [별지 제 1 호]를 참고하여 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상담보고서 활용 시 파악할 투자자정보 항목 예시

【개인정보】

▷ 투자자의 성명, 나이, 가족관계(부양가족 여부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목적 및 투자기간】

- ▷ 투자자의 투자목적(정기적 수입, 은퇴자금, 교육자금, 자산증식 등)과 해당목적에 따른 예상 투자기간 등에 관한 답변 사항
- ▷ 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투자경험 유무 및 투자기간 등

【재산상황】

▷ 투자자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자산현황(금융자산, 부동산 등), 수입원(고정수입원 유무, 직장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월수입, 지출현황 등), 향후 5 년 동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예상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경험 및 지식, 투자권유 의존도】

▷ 투자자의 투자경험("파생상품 등"을 포함하여 기존 투자했던 금융상품 유형 및 투자기간 파악), 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지식수준, 투자결정시 전문가에의 투자조언 여부 등에 관한 답변 사항

【위험에 대한 태도】

▷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및 손실률에 대한 감내수준, 시장상황(예 : KOSPI 지수 추이)에 따른 기대 수익률(가상의 수익률 안을 여러 개 제시), 큰 폭의 시장하락 또는 장기적인 시장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별 누적수익률에 대한 선호도(가상의 투자안을 여러 가지 제시함), 5 년 이상의

투자기간에 대한 가상의 기간별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결정(투자자금 전액 출금, 일부 출금, 추가매입, 보유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기타 사항】

▷ 투자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특이정보(2년 후 이민계획, 자녀의 대학 입학, 자녀의 유학계획 등)를 기재함

상담보고서 작성 예시

예시 1)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 상담사는 투자자가 이번 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으로서,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으로 00년 00월이 만기인, 원금대비 손실이 20%로 제한되는 00 ELS 00호(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 2)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 상담사는 투자자가 “금융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식시장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 35세의 투자자로서 매월 급여(약 400만원 수준)중 100만원 정도를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시장 수준의 이익을 내기를 바라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투자자는 기간을 두고 금융투자상품이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매월 100만원씩 00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 3)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 상담사는 투자자가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면서도, 자녀들의 대학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의 투자금을 장기적으로 약간 위험하더라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은 저위험 상품인 00국공채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향후 3년 후부터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보이는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100만원 정도를 00혼합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 별표 3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매우 높은 위험 (Very High Risk)	높은 위험 (High risk)	중간 위험 (Middle Risk)	낮은 위험 (Low Risk)	매우 낮은 위험 (Very Low Risk)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주 1)
매우 높은 위험 (Very High Risk)	-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높은 위험 (High risk)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 (Middle Risk)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상품에 1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차익거래를 주요 투자전략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저위험 (Low Risk)	- 고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 적격 등급(BBB-이상)의 국내 채권 등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매우 낮은 위험 (Very Low Risk Free)	- MMF(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혹은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고위험자산: 주식, 후순위채, 투기등급(BB+이하)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가.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나.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다. 위험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